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부천시)

□ 민원 제목 : 월 정기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소 미개방에 따른 이의

□ 신청 원인

- 어린이 공원 내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월 정기 운영을 이유로 출입을 거절함.
- 해당 공영 주차장은 공원 이용객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월 정기권 이용자 전용으로만 운영되어 일반 시민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임.
- 전기차 충전시설을 공공기관의 경우 전부 개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민원응대는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공영주차장 개방을 요구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피신청인 (부천시 교통정책과)은 해당 공영주차장이 2015년부터 월 정기권 전용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함.
- 현행법령 상 개방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충전시설 개방을 위해서는 요금 정산기 설치, 진출입로 경사로 평탄화 등 추가적인 시설 정비와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사실관계

- 민원 대상지 공영주차장은 2006년 최초 준공되어 일부 주차 공간에 대해서만 월 정기권 운영을 하였다가, 2015년 정기권 전용 운영으로 전환 후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해당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월 정기권 이용자만 진입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시민은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임.
-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당시(2015년 이후) 공영주차장은 이미 월 정기권 전용 운영으로 전환된 상태였으며, 충전시설 설치 이전에 이미 정기권 전용 운영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음.
-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충전 시설 개방 의무가 강화되고 있으나, 해당 주차장은 개방을 위한 별도의 시설 정비 없이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 관계법령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9 제2항

□ 판단 및 결론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2 제1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개방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9 제2항에서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공영주차장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개방 예외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민원 대상지 공영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점보다 이전에 조성된 공공시설로 충전시설을 개방할 경우 이를 위한 요금 정산기 설치 및 진출입로 경사로 평탄화 작업 등 추가 비용 부담에 따른 예산 확보와, 기존에 월 정기 운영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내기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결론) 피신청인은 해당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되, 개방을 위한 요금 정산기 설치 및 진출입로 경사로 정비 등 필요한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기존 월 정기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 기간을 확보한 후 개방을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함.